| 의안번호 | 제 248 호 |
|---|---|
| 의 결<br>연 월 일 | 2019년 월 일<br>(제375회) |

#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발 의 자 | 이상식 의원 등 31인 |
|---|---|
| 발의연월일 | 2019년 8월 일 |

#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식 의원 대표발의)

| 의안 번호 | 248 |
|---|---|

발의연월일 : 2019년 8월 일

발 의 자 : 이상식·박우양·임영은·박문희·이상정·하유정·박상돈·최경천·박형용·심기보·육미선·이상욱·이옥규·허창원·전원표·송미애·정상교·연철흠·이수완·연종석·김기창·박병진·오영탁·윤남진·이숙애·황규철·서동학·이의영·박성원·김영주·장선배 의원(31명)

1. 제안 이유

○ 글로벌 경제의 국제분업에 대한 유동성 확대와 대일본 소재·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충청북도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통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소재·부품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소재·부품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소재·부품산업의 육성지원(안 제5조)

○ 소재·부품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안 제6조)

○ 충청북도소재·부품산업육성위원회 설치·기능·구성·운영 등에 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0조)

3. **조례안** : 붙 임 4. **관계법령 발췌** : 붙 임

5. **예산조치** : 붙 임 6. **관련부서 협의** : 경제통상국 전략산업과와 협의

7. **입법예고** : 2019. 8. 7. ~ 2019. 8. 13.(7일간, 특이의견 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소재·부품 및 그 생산설비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재·부품”이란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소재·부품기업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상품 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을 말한다.
2. “소재·부품산업”이란 제1호를 제조·조립·가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소재·부품전문기업”이란 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재·부품기업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4.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이란 소재·부품분야의 기술에 대한 연구와 시제품의 제작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부품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재·부품산업의 첨단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소재·부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3년마다 소재·부품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내 소재·부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도내 소재·부품분야에 대한 기술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도내 소재·부품전문기업 및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내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소재·부품산업의 육성지원) ① 도지사는 소재·부품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보조·출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재·부품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4. 소재·부품전문기업 및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 지원

5. 소재·부품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정착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지원

6. 소재·부품 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참여, 참관 등의 지원

7. 해외 교류·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8. 국제공동 연구개발 및 협력 사업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의한 위탁사업의 수행에 따른 소요경비를 협약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기관에 지급 할 수 있다.

제6조(소재·부품기업에 대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소재·부품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 첨단화 및 친환경기업으로 전환 촉진사업

3.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대상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3호와 제4호 중 현재 운영중인 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도에 소재하는 기업
2. 도에서 창업 또는 타 자치단체에서 도로 이전하고자 하는 소재·부품산업 관련 기업
3. 「소재·부품기업법」 제5조제3호에 의한 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평가) ① 도지사는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의 수행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해 제출된 사업보고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소재·부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소재·부품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제4조의 소재·부품분야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소재·부품분야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소재·부품산업의 전략

적 중요성을 감안해 충청북도 전략산업육성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은 도의 소관국장으로 한정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관련 안건에서 제척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의 누설금지) 위원이나 관계공무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소재·부품산업의 육성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단체에게 「충청북도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재·부품 및 그 생산설비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재·부품"이라 함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소재·부품 생산설비"라 함은 소재·부품을 제조·조립·가공하는 설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재·부품전문기업"이라 함은 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총매출액중 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3.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이라 함은 소재·부품분야의

기술에 대한 연구와 시제품의 제작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신뢰성“이라 함은 소재·부품의 품질·성능 등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일정한 기간에 요구되는 수준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제5조의3(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5조의2의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발급된 확인서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2조제2호의 소재·부품전문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서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업에게 이를 알려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충청북도의 주력산업이 특정국가의 보호무역 등 급변하는 국제 통상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소재부품 및 생산설비 산업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도내 기업들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2. 비용 발생 요인

○ 부품소재기업의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국내외 판로지원, 기반시설구축, 위원회 참석수당 등 지원에 따른 제비용

## 3. 관련조문

○ 제5조(소재·부품산업의 지원대상 등)①도지사는 소재·부품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보조·출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재·부품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4. 소재·부품전문기업 및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 기술촉진 및 판로 지원
5. 소재·부품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정착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지원

○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④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 4. 비용 추계결과

가. 재정수반 요인 : 기술개발, 인력양성, 판로개척, 기반시설구축 등

나. 추계의 전제 :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 과제 사업화

다. 추계결과 : 2020년부터 향후 5년간 세출 35,000백만원 정도 소요

라. 재원조달방안 : 국비 50%, 지방비 30%, 기타20%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계 | 1차년도 (2020년) | 2차년도 (2021년) | 3차년도 (2022년) | 4차년도 (2023년) | 5차년도 (2024년) |
|---|---|---|---|---|---|---|
| **세 출** | 8,072 | 1,214.4 | 1,714.4 | 1,714.4 | 1,714.4 | 1,714.4 |
| 기술개발 등 | 4,500 | 5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전문인력양성 등 | 1,000 | 200 | 200 | 200 | 200 | 200 |
| 국내외 판로개척 등 | 1,000 | 200 | 200 | 200 | 200 | 200 |
| 기반시설 구축 지원 등 | 1,500 | 300 | 300 | 300 | 300 | 300 |
| 위원회 참석수당 | 72 | 14.4 | 14.4 | 14.4 | 14.4 | 14.4 |

## 6. 작성자 : 경제통상국 전략산업과장 김상규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 구 분 | | 1차년도 (2020년) | 2차년도 (2021년) | 3차년도 (2022년) | 4차년도 (2023년) | 5차년도 (2024년) | 계 |
|---|---|---|---|---|---|---|---|
| **세 출** | | 1,214,400 | 1,714,400 | 1,714,400 | 1,714,400 | 1,714,400 | 8,072,000 |
| 기술개발등 | | 500,000 | 1,000,000 | 1,000,000 | 1,000,000 | 1,000,000 | 4,500,000 |
| 전문인력양성 등 |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1,000,000 |
| 국내외 판로개척 등 |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1,000,000 |
| 기반시설 구축지원 등 | | 300,000 | 300,000 | 300,000 | 300,000 | 300,000 | 1,500,000 |
| 위원회 참석수당 | | 14,400 | 14,400 | 14,400 | 14,400 | 14,400 | 72,000 |
| **재원 조달** | | 1,214,400 | 1,714,400 | 1,714,400 | 1,714,400 | 1,714,400 | 8,072,000 |
| 의존 재원 | 소 계 | 607,200 | 857,200 | 857,200 | 857,200 | 857,200 | 4,036,000 |
| | 보조금 | 607,200 | 857,200 | 857,200 | 857,200 | 857,200 | 4,036,000 |
| | 지방교부세 | | | | | | |
| | |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364,320 | 514,320 | 514,320 | 514,320 | 514,320 | 2,421,600 |
| | 지방세 | 364,320 | 514,320 | 514,320 | 514,320 | 514,320 | 2,421,600 |
| | 세외수입 | | | | | | |
| | | | | | | | |
|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 242,880 | 342,880 | 342,880 | 342,880 | 342,880 | 1,614,400 |